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수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

1. 제정이유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의 관련법령인 「야생동·식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피해보상의 요건(안 제3조)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4조)
○ 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6조)
○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 및 세부규정 신설(안 제7조～제9조)
○ 농작물 피해 보상금 산정 규정(안 제11조)
○ 야생동물 자율구제와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1조)
○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9조)
○ 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규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

다. 기　타

· 조례안예고 : 의견없음 〔2013. 4. 29~5. 8(10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코자「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경영활동"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가의 자력구제"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요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람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작물피해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 1부(피해자 사망시)
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제2장 인명피해 보상

제7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인이 농업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농업경영활동에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물 자율구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8조(피해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2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당 누적된 인명피해 총 보상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임산물 채취,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본인 의료비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3장 농작물 피해 및 자력구제 보상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성주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지번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1회에 한하고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와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피해 방지단"이라 한다) 운영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수가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포획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포상금 금액은 예산사정과 농작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피해 방지단 구성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읍면 지역에서 즉시 출동이 가능한 모범 수렵인을 우선 선발하고, 이외는 군수가 관내 모범 수렵인을 선발하여 구성한다.

제12조(피해보상제외)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피해보상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4장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제13조(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이외는 농업경영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자로 한다.

제1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위원장이 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실비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 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율 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등을 환수 당한 자 및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22조(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 대장을 갖추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				
피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 장 번 호	
피 해 발 생 현 황	피해지역			
	피해발생 날 짜			
	가 해 야생동물			
	피해내용 (발생경위)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2. 의사소견서 등 치료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농가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 장 번 호	
피해현황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일간)		
	경작지면적	㎡	피 해 면 적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00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h colspan="7">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서</th></tr>
<tr><td colspan="2" rowspan="2">피 해 자</td><td>이 름</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9">피해
조사
결과</td><td rowspan="2">인명피해</td><td>피해내용</td><td></td><td>가해야생동물</td><td colspan="2"></td></tr>
<tr><td>피해경위</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7">농작물피해</td><td>피해지역</td><td colspan="4"></td></tr>
<tr><td>피해농작물</td><td></td><td>가해야생
동 물</td><td colspan="2"></td></tr>
<tr><td>경작지면적</td><td>㎡</td><td>피해면적(A)</td><td colspan="2">㎡</td></tr>
<tr><td>농작물의
피해율(B)</td><td>%</td><td>농작물
보상단가(C)</td><td colspan="2">원</td></tr>
<tr><td>피 해 액
(D=A×B×C)</td><td>원</td><td>보상비율(E)</td><td colspan="2">%</td></tr>
<tr><td>최 종
산정금액
(F=D×E)</td><td colspan="4">원</td></tr>
<tr><td rowspan="9">피해
보상
제한
여부</td><td rowspan="4">인명피해</td><td colspan="3">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colspan="3">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활동 중 피해 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colspan="3">본인 의료비 부담금 10만원 미만 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colspan="3">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지원 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rowspan="5">농작물피해</td><td colspan="3">농작물 총 피해액 10만원 미만 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colspan="3">피해면적 165㎡미만 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colspan="3">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colspan="3">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지원 여부</td><td colspan="2">여(), 부()</td></tr>
<tr><td colspan="2">기타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유족)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읍·면장 (인)

성 주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7">※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2. 현장사진 붙임</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table>
<tr><th colspan="5">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서</th></tr>
<tr><td rowspan="3">피 해 자
(신청자)</td><td>이 름</td><td colspan="3"></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인명피해</td><td>피해지역</td><td colspan="3"></td></tr>
<tr><td>피해내용</td><td></td><td>가해야생동물</td><td></td></tr>
<tr><td rowspan="4">농작물피해</td><td>피해지역</td><td colspan="3"></td></tr>
<tr><td>피해농작물
(내용)</td><td></td><td>가해야생동물</td><td></td></tr>
<tr><td>경작지면적</td><td colspan="3">(㎡)</td></tr>
<tr><td>피해면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보상금액</td><td colspan="3">원</td></tr>
<tr><td colspan="5">「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인)</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성주군 면 길		
④ 피 해 내 용				
⑤ 피 해 자 와 의 관 계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⑥ 피 해 보 상 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 1부.(피해자 사망시)
4. 기타 유족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피해자 사망시)
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제22조 관련)

연번	피 해 자			피 해 발생일	피 해 내 용	보상금 신청액	처 리 결 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상금 지급액	보상금 지급날짜	미보상 (사유)

(별지 제7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제22조 관련)

연번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자			농작물피해 발생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										처리결과	
	이름	주소	신고일	피해 농경지	피해 작물	가해야생동물명	경작 면적 (㎡)	피해 면적 (㎡)	피해율 (%)	보상 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 비율 (%)	산정 보상액 (원)	보상액 (지급일)	미보상 (사유)